

시 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709
결재일자	2013.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협 조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2013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계획

2013. 1.

복 지 건 강 실
(보건의료정책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음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정신보건법) 무 <input type="checkbox"/>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관 계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시 산 하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2013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계획

2013년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고객에게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함

I 지원근거

-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 정신보건법 제48조(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 정신보건법 제52조(보조금 등)
- 복지정책과-1075호('13.1.13) '1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II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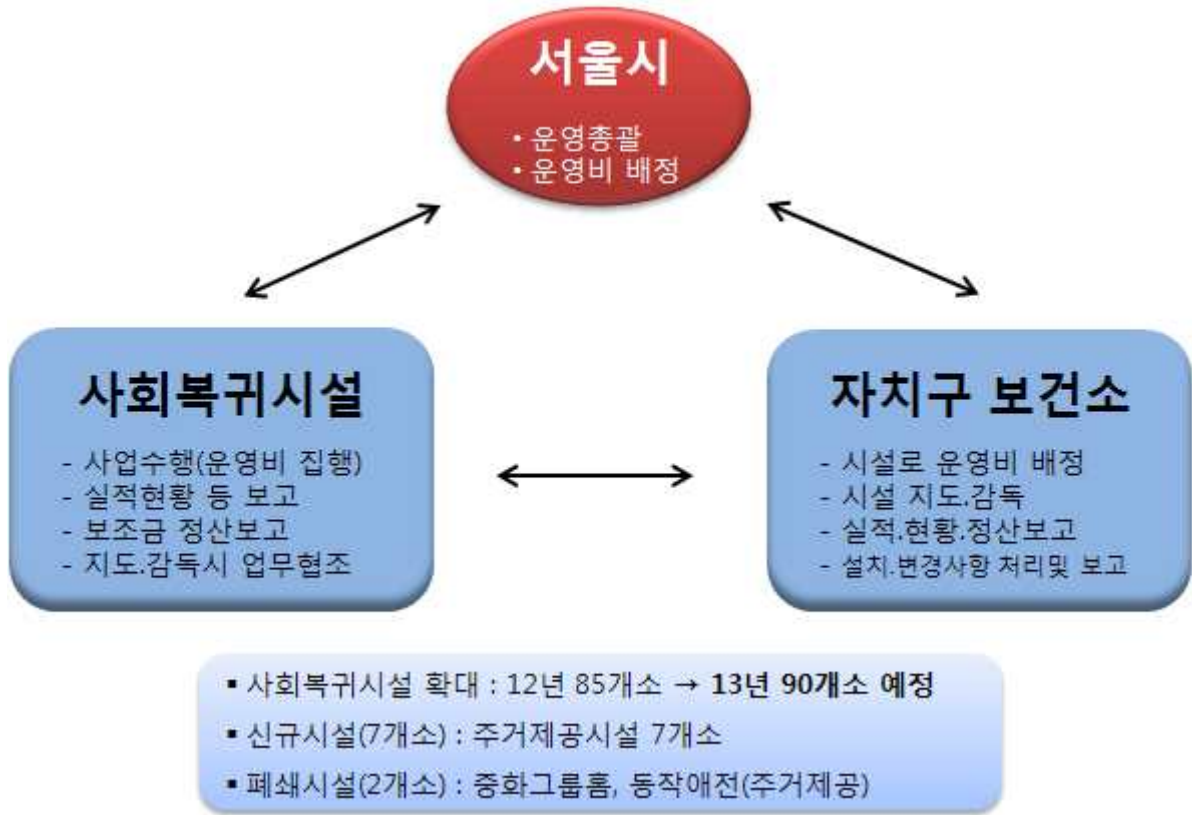
- 사업명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 사업기간 : 2013.01.01 ~ 2013.12.31
- 시설현황 : 83개소 ('13년 신규지원시설 : 7개소 추가 예정)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이용시설		주거시설	입소시설
		주간재활	직업재활	주거제공	중독자재활
시설수	83(7)	28	1	51(7)	3
이용자 수	1,702(49)	1,157	40	443(49)	55
종사자 수	322(14)	192	6	107(14)	17

※ ()안은 2013년 신규증원 시설수 및 인원

III 추진체계



IV 세부운영지원

■ 종사자 인건비

- 기본급 : 2013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붙임1)
- 수 당 : 수당기준 (붙임2)

■ 운영비

- 지원금액

(기준 : 입소(이용)인원 1인당 / 년)

구분	입소시설	주거시설	이용시설	비고
관리운영비	689,260원	689,260원	474,540원	'12년 대비 동결
프로그램운영비	185,760원	185,760원	185,760원	'12년 대비 동결

● 지원내역

◆ 관리운영비

-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교육여비, 물품구입비 등

◆ 프로그램운영비

- 생활훈련, 작업훈련, 여가활동, 부서활동진행비 등 입소 및 이용고객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 비용

V 소요예산

■ 예산총액 : 14,783,375천원

■ 재원부담 : 시비 100%

■ 지원방법 : 시에서 자치구로 분기별 재배정 후 자치구에서 시설로 배정

■ 예산과목 : 보건의료분야서비스수준향상, 정신보건시설운영,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보조, 사회복지보조

VI 행정사항

■ 정기 지도·감독

- 관할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반기 1회이상 실시
- 진정·투서 등이 있을 경우 서울시에서 수시 특별점검 가능
-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시정조치, 행정처분 등)하고, 동일 위반사항이 재적발되거나 행정처분 미 이행시 처벌강화 및 불이익 조치

■ 시설 현황 보고

- 관할 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 운영 현황과 지도·감독 결과를 매 반기 다음달 (7월, 1월) 7일까지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는 매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붙임 : 1. 2013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기본급 지급기준 1부.
2. 수당 지급기준 1부. 끝.

2013년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표

(단위 : 천원)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 활 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	1,258	1,046	990	906	792	891	2,278
2	1,295	1,081	1,023	933	821	919	-
3	1,332	1,115	1,057	961	850	947	-
4	1,368	1,151	1,091	989	879	974	-
5	1,405	1,186	1,124	1,017	906	1,002	-
6	1,441	1,221	1,159	1,044	934	1,030	-
7	1,479	1,257	1,193	1,072	963	1,057	-
8	1,515	1,291	1,227	1,100	992	1,085	-
9	1,553	1,327	1,260	1,128	1,021	1,112	-
10	1,589	1,361	1,294	1,156	1,050	1,140	-
11	1,626	1,397	1,327	1,183	1,078	1,167	-
12	1,662	1,431	1,360	1,209	1,108	1,195	-
13	1,700	1,466	1,395	1,237	1,137	1,223	-
14	1,736	1,503	1,428	1,265	1,166	1,250	-
15	1,774	1,537	1,462	1,293	1,195	1,278	-
16	1,810	1,573	1,496	1,321	1,224	1,306	-
17	1,847	1,607	1,531	1,348	1,253	1,333	-
18	1,883	1,642	1,564	1,376	1,281	1,361	-
19	1,920	1,678	1,599	1,404	1,310	1,388	-
20	1,956	1,713	1,632	1,432	1,339	1,416	-
21	1,994	1,750	1,665	1,460	1,368	1,444	-
22	2,030	1,784	1,699	1,485	1,397	1,471	-
23	2,067	1,819	1,733	1,513	1,425	1,499	-
24	2,103	1,854	1,767	1,541	1,453	1,526	-
25	2,140	1,889	1,800	1,569	1,482	1,554	-
26	2,178	1,924	1,834	1,597	1,511	1,582	-
27	2,215	1,959	1,869	1,624	1,540	1,609	-
28	2,251	1,993	1,902	1,652	1,569	1,637	-
29	2,288	2,030	1,937	1,681	1,599	1,665	-
30	2,324	2,065	1,970	1,709	1,627	1,692	-

201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호봉을 근무연수로 인정하되, 미만으로 인정) 예) 5호봉-5년미만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 장기 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10~14년 15~19년 20년이상	정액 4만원 정액 5만원 정액 6만원 정액 8만원	매월 보수 지급일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 지급)
라) 가계안정 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5만원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11만원	매월 보수 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2회, 설과 추석에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 특수근무수당				
가) 시설장수당	시설장		정액 10만원	매월 보수 지급일
나) 사무국장수당	사무국장		정액 10만원	
다) 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9만원	
라) 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11만원	
마) 조리·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9만원	
(4)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주 40시간제)
(5)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만원 (배우자 3만원)	
(6) 복지수당	전 종사자	5년미만 5년이상	정액 24만원 정액 29만원	매월 보수 지급일 (서울시경력임)

